

국 토 교 통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기 관 명 기장군, 강서구, 북구

내 용

부산광역시 기장군(○○○○○과)에서는 2014. 2. 6.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 ○○마을 일원에 마을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2015. 12. 19.까지 382,464,52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3개 구·군에서는 【표】와 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총 1,718,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1,693,465,84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공사기간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미반납액
합 계		1,718,000,000	1,693,465,840	24,534,160	23,737,350
○○마을 농산물보관창고 (기장군)	2014.2.6.~ 2015.12.19.	400,000,000	382,464,520	17,535,480	17,535,480
○○동 ○○ 마을회관 건 립(강서구)	2014.2.6.~ 2015.1.31.	168,000,000	163,586,850	4,413,150	4,413,150
○○천 주변 ○○공동주차 장 건립(북구)	2014.2.6.~ 2015.12.9.	1,150,000,000	1,147,414,470	2,585,530	¹⁵²⁾ 1,788,720

※ 부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152)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2016. 12. 27. ○○천 주변 ○○공동주차장 건립공사 집행잔액 796,810원을 국토교통부로 반납하였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4. 2. 3. 국토교통부에서 부산광역시에 보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된 보조금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장군 ○○마을 농산물보관창고 신축공사 목적으로 2014년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400,000,000원 중 382,464,520원을 2015. 12. 19.까지 이월하여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2016년까지 지출하지 않은 집행잔액 17,535,480원을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이 완료된 2015. 12. 19.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7. 3. 24.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집행잔액 17,535,48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기장군 등 3개 구·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3,737,350원 상당을 예산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소 1년 3개월이 경과한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

[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535,48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은

[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13,15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은

[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88,72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